

보상계획 열람 공고

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5-80호 학교시설사업(인천세무고등학교 이전 신축) 시행 계획 및 도시·군 관리계획 결정(변경) 승인인가 된 인천세무고등학교 이전 신축사업 내의 토지,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05월 11일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지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214-1번지 일원
- 나. 사업의 종류 : 학교시설사업
- 다. 사업의 명칭 : 인천세무고등학교 이전 신축사업
- 라. 사업 시행자 : 학교법인 봉선학원 이사장

2. 보상대상

- 가. 토 지 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-10
- ※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내용 참조

3. 보상계획

- 가. 보상 시기 : 감정평가 후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개별통지
- 나. 보상금 산정 방법

- 1) 보상금액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 68조 및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. 다만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
- 2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음
- 3) 토지소유자가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,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.

〈감정평가업자 추천서〉

토 지 소재지	편입 지번	지 적 (㎡)	편입면 적(㎡)	소 유 자		날 인	전 화 번 호 (주택및휴대폰)	비고
				주 소	성 명			

※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· 날인하여야 하며, 대리인 서명은 불가 함(토지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) 그리고 소유자가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다. 보상절차 :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출 평균하여 결정하며 협의 계약 체결 후 전액 현금으로 계좌입금

4. 보상계획 열람

가. 열람 기간 : 2015. 05. 11 ~ 2015. 05. 26(15일간)

나. 열람 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재육성과(☎032-560-5893)
학교법인 봉선학원 (☎032-428-4522)

5. 이의 신청

열람결과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서의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학교법인 봉선학원(☎032-428-4522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기타 사항

가.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해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나. 기타 문의 사항은 학교법인 봉선학원(☎032-428-452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